

2024년도 「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장비운용 교육」 참여자 모집공고 1차시[4월]

화성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 보유 중인 장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“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장비운용 교육(1차시)” 을 시행합니다.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
2024. 3.
(재)화성산업진흥원장

▣ 교육개요

- 교육대상: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
- 교육일정: 4. 15.(월)~4. 29.(월) ※ 세부일정 커리큘럼 참조
- 교육장소: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
 - (주소)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동탄2인큐베이팅센터 2층
- 교육인원: 과정별 10명 내외
 - * 수강인원 과다 초과될 경우 인원/일정 등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.
- 추진과정



*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
□ 교육내용

- (스마트팩토리) 3D 프린터(복합수지) 운용 및 시제품 활용
- (부품 신뢰성) 향온향습챔버 · 열충격챔버 · 만능재료시험기 운용 및 데이터 해석
- (전자파 적합성) CDM · ESD · EOS · CS · EMC 운용 및 데이터 해석
- (신호계측) 네트워크 분석기, 오실로스코프 등 계측장비(8종) 운용 및 데이터 해석
- (검사분석) 비접촉식 3차원 측정기, 광학현미경 운용 및 데이터 해석

- 커리큘럼(안)_1차시 기준 ※ 하반기 2, 3차시 진행예정, 커리큘럼은 변동가능
 - 각 과정기준으로 최소 1개 과정~최대 9개 과정까지 신청가능(단, 과정 중 일부 장비만 선택하여 수강은 불가)
 - 수료증은 각 과정별 출석률 100%(시작·종료시 각 1회 체크) 충족 시 발급(과정당 1개씩 발급됨)

과정명	교육시간	교육장비	교육일정	
			날짜	시간
9개 과정	39h	19개 장비		
3D 프린터(복합수지)	4h	3D 프린터(복합수지)	4/15(월)	13:00-17:00
챔버	3h	소형 향온향습챔버	4/16(화)	14:00-17:00
		중형 향온향습챔버		
		열충격챔버		
전자파 적합성 1	4h	CDM TESTER	4/17(수)	13:00-17:00
		ESD TESTER		
		EOS TESTER		
전자파 적합성 2	4h	CS TESTER	4/18(목)	13:00-17:00
전자파 적합성 3	4h	EMC TESTER	4/19(금)	13:00-17:00
RF	3h	Network Analyzer	4/23(화)	9:00-12:00
		RF Power Meter		
		Spectrum Analyzer		
신호측정	4h	Oscilloscope	4/23(화)	13:00-17:00
		LCR Meter		
		파워 디바이스 분석기		
		Scope Corder		
3차원 측정기	8h	비접촉식 3차원 측정기	4/24(수)	9:00-18:00
현미경	5h	탁상형 주사현미경	4/29(월)	13:00-18:00
		광학현미경		

* 교육 커리큘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▣ 모집개요 [무상교육]

- 접수기간: 2024. 3. 28.(목)~4. 11.(목) 14시까지
- 신청방법: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 - 홈페이지 접속(hipa.hscity.go.kr) → 회원가입(승인필요) → 지원사업공고 → ‘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장비운용 교육’ 클릭 후 참여신청
 - ‘기업회원’ 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동일 기업에서 다수 동시 신청 시 단일 계정(기업회원)으로 신청하되 신청서 상에 신청자 정보 모두 기입하여 제출

신청 시 유의사항

- 1) 신청서식은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, 모든 요구서류 구비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
- 2) 방문-이메일 제출 불가(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)
- 3)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
- 4) 마감 당일에는 접수가 물릴 수 있으므로 미리 회원가입 후 제출할 것을 권고

□ 지원자격: **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화성시 소재 개인 또는 법인 기업**의 대표 및 근로자

구분	자격 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본요건	가.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한 도시형 소공인*인 기업 * 도시형 소공인: ①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,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'제조업'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나.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(화성시 전역) 주요 업종^[참조]을 영위중인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[참조]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주요업종(중분류 기준 10가지) - 아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기준이며, 해당 중분류 업종의 대분류는 모두 "C (제조업)"임. * '업종코드-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' 노랑셀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분류</th> <th>중분류</th> <th>중분류명</th> <th>대분류</th> <th>중분류</th> <th>중분류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C</td> <td>20</td> <td>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</td> <td>C</td> <td>27</td> <td>의료, 정밀,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21</td> <td>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</td> <td>C</td> <td>28</td> <td>전기장비 제조업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22</td> <td>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</td> <td>C</td> <td>29</td> <td>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25</td> <td>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</td> <td>C</td> <td>30</td> <td>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</td> </tr> <tr> <td>C</td> <td>26</td> <td>전류용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</td> <td>C</td> <td>31</td> <td>기타 운송장비 제조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분류	중분류	중분류명	대분류	중분류	중분류명	C	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C	27	의료, 정밀,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C	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	C	28	전기장비 제조업	C	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	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	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	C	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	26	전류용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	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대분류	중분류	중분류명	대분류	중분류	중분류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C	27	의료, 정밀, 과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 제조업	C	28	전기장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	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	C	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6	전류용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	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	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화성시 내 연구소(또는 연구전담부서)가 위치한 기업	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관내기업 으로 인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요약	① 소공인 ② 집적지구 주요 업종코드 영위 ③ 화성시 관내 기업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근로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제출서류 목록

- (필수제출 서류) 적색 '●' 표시, (선택제출 서류) 검은색 '●' 표시

업로드 단계 <3단계 신청정보 입력 중>	제출항목	비고
「제출서류 업로드」	● (서식 제1호) 교육신청서	
	●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1부	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s://sminfo.mss.go.kr/)' 에서 발급
	●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) 1부	
	● 공장등록증 1부	관의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인 경우 필수
	●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인정서 1부	관의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인 경우 필수

[참조]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

- 발급서류는 모두 공고일 기준 3개월 전 이내 발급분 제출
- 소상공인확인서는 '**소기업-소상공인**' 문구가 있어야 인정
 *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/)'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, 5일~10일 내외 소요 될 수 있음
 (☎ 문의처 :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1811-6508)
 ** '착한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' 인정불가

3) 신청서 상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표준산업분류(5자리 숫자) 중분류 기준 10가지(앞 두자리)와 일치하면 되며, **본인 업종을 모르겠는 경우 아래 확인 방법 참고**

* 붙임의 업종코드-표준산업분류코드 연계표 참조

<주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방법>
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**주업종명(업종코드)조회**
 - 순서: 로그인(필수) ▶ MY홈택스 ▶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▶ 주업종명(업종코드) 조회
 - 홈택스 문의처: 국번없이 126
- '업종코드-표준산업분류 연계표'에서, 홈택스에서 조회한 업종코드(연계표 좌측 6자리)를 표준 산업분류(연계표 우측 5자리)와 대조

□ 지원 제외대상

○ 부적격 대상이거나 중복수혜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제외

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지원 제외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.

부적격 대상

- 공고 마감일 기준 소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 * 단, 소공인 자격을 상실한 연도의 다음년도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소공인으로 인정
- 공고 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(사업자 미등록자)인 경우
- 공고 마감일 기준 화성시 외 지역 소재기업(지점은 관내 기업으로 인정불가)인 경우
- 신청서, 발표자료 등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
- 휴폐업 혹은 파산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그 외 제재사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본 사업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

◆ 향후일정 및 유의사항

□ 향후일정

- (신청결과 안내) 공고 완료 후 신청결과 및 과정별 신청자 리스트 안내 예정(메일송부)
- (현장 본인확인) 현장에서 인적사항 대조 예정
- (수료증 발급) 수료증은 **과정별로 발급되며, 출석률 100% 충족(시작 및 종료시 출석체크 각 1회)하여야 함.**

□ 유의사항

- 제출한 일체 서류는 교육을 위해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음.
- 참가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(기준), 기타 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 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참가자에게 있음.
- 참가자는 향후 설문조사 등 진흥원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,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.

◆ 문의처

□ [사업문의] (재)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팀

○ ☎ 031-377-3943, ✉ kjy@hsbiz.or.kr

□ [홈페이지 사용 문의] (재)화성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

○ ☎ 031-278-4392, ✉ jonghyun@hsbiz.or.kr

*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요망

** 상기 공고내용은 사업운영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[재]화성산업진흥원장

참조 1 도시형 소공인 정의
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23. 12. 21.] [대통령령 제33958호, 2023. 12. 12., 일부개정]

제2조(도시형소공인의 업종)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(이하 “도시형소공인 업종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8. 10. 30.>

참조 2 업종분류 기준 참고

□ 업종구분이란?

-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, 세세분류(산업분류 5자리)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.
 - * (예) 사업자등록증의 종목(아이템)으로 구분 : (29294) 주형및금형제조업
- (사업자등록 업종) 사업자등록증(명)에 표시된 업종(업태)을 원칙으로 함
- (주된 업종)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, 주된 사업(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)을 기준으로 함

※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

-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
 - *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(국고보조금, 개발보조금 등)은 제외하고 산정
(예) 제품매출 > 상품매출 → 제조업으로 분류
제품매출 < 상품매출 → 도소매업으로 분류
-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,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(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(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) 확인)의 매출액(수입금액)을 기준으로 함
 - 부가가치세신고서 : 일반, 간이과세자 -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
 - 사업장현황신고서 : 면세사업자 - 수입금액(매출액) 명세 업태 확인

*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가능